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19

2005.03.01.제정 2007.03.01.개정 2009.02.09.개정 2011.12.01.개정 2012.04.01.개정 2013.08.06.개정 2016.09.01.개정 2019.12.10.개정 2020.03.18.개정 소판부서 : 사무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에서 행하는 포상과 대외포상에 관하여 포상대상자를 심사, 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대상자 추천을 위한 기준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포상의 종류)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대내 포상과 대외포상으로 구분한다. ② 대외포상에는 각종 훈·포장 및 표창장 등을 포함한다.
- 제3조(포상방법) ① 대내 포상을 행할 때는 소정양식에 의한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하며 본교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.<개정 2016.09.01.> ② 대외 포상은 수상기관이 정한 양식과 방법에 의한다.
- 제4조(포상권자) ① 대내 포상은 [별표1]에 의하여 학교법인 화신학원 이사장 및 총장이 된다.
 - ② 대외 포상은 수상기관이 정하는 대로 행한다.
- 제5조(포상의 대상) ①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이사장상
 - 가. 화신가족패 : 정년(명예)퇴직하는 교직원
 - 2. 총장상
 - 가. 장기근속상 : 본교에서 10년, 20년 30년 장기근속 한 교직원
 - 나. 대학발전기여상 및 공적상 : 평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교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
 - 다. 교수업적평가상 : 당해연도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수
 - 라. 직원근무평정상 : 당해년도 근무평정 결과가 우수한 직원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19

- 마. 강의우수교수상 : 당해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임교원, 겸임교원 및 외래교수
- 바. 창안상 :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본교발전에 끼친 공이 현저한 교직원
- 사. 감사패(장) :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부기관 및 단체나 개인(외국인 포함) 아. 상패(장)
 - 1).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경진대회 입상자
 - 2). 본교와 연계 및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의 학생 중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 학생
 - 3)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포상대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[별표1]에 의하여 행한다.
- 제6조(대상자의 추천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내 포상 추천은 대학본부 처·실장 및 해당 업무 수행 부서장이 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 - ② 제5조의 포상 추천을 하고자 할 때는 수여 예정일 20일 전에 [별지 1] 서식의 공적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장기근속 및 정년(명예)퇴임에 따라 시행하는 제5조 ① 항 1호의 가목 및 제2호의 가, 나목과 각종 대회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제5조 ① 항 2호의 아목의 포상은 공적조서 작성을 생략한다.
 - ④ 대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당해 기관의 추천방법에 의하여 행한다.
- **제7조(공적심사위원회)**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5~8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. <개정 2020.03.18.>
 -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8조(공적심사)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제6조 ③항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.
- **제9조(포상의 시기)**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.
 - ②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 - 1. 정기포상
 - 가. 장기근속상 : 학교개교기념일(단, 해당자가 학교개교기념일 이전에 정년(명예)퇴임일로 한다)
 - 나. 화신가족패 : 정년(명예)퇴임일
 - 다. 교수업적평가상 및 직원근무평정상 : 익년도 6월말
 - 라. 강의우수교수상 : 매 학기 종료 후
 - 마. 창안상 : 매 학년도 종료 후(단,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)

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19

2. 수시포상

가. 표창장 : 포상 사유발생 시

나. 공적상, 발전기여상, 감사패(장), 상패(장) : 포상 사유 발생 시

3. 대외 포상은 당해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따른다.

제10조(표창기회의 공정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포상대장 비치)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은 [별지2] 서식의 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,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일 경우에는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한다.

제12조(이중포상의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13조(제척) 포상추천 대상자 본인은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정부포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1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19

[별표 1] 포상 세부 내역

1. 이사장<개정 2016.09.01.>

구 분	포 상 명	포 상 대 상	부 상	비고
기념패	화신가족패	· 정년(명예)퇴임 교직원	순금반지 (금2돈/개)	

2. 총장<개정 2016.09.01.>

구 분	포 상 명	포 상 대 상	부 상	비고
	10년 근속상	· 10년간 본교에서 근속한 교직원	순금 반지 1개 (금1돈/개)	
공로패	20년 근속상	· 20년간 본교에서 근속한 교직원	순금 반지 1개 (금2돈/개)	
	30년 근속상	· 30년간 본교에서 근속한 교직원	순금 반지 1개 (금3돈/개)	
표창장	대학발전 기여상 / 공적상	 본교의 발전과 건학이념 실현을 위하여 올바른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실적이 뛰어난 수준 높은 연구실적물(저서, 번역서, 논문, 작품전시 등)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,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학생지도 활동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 기여한 자 신입생 및 산업체위탁생 유치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여 그 공로가 있는 자 전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졸업생 취업활동 및 산학협력에 열과 성을 다하여 그공로가 있는 자 대학행정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자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신념과 품위를 유지하고,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의 명예를 높인 자 직무발명 및 제안제도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이나 수익을 도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교직원 산학협력, 기술개발, 사회봉사 등을 통해학교의 명예를 빛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보조적 역할을 한 교직원 5천만원 상당 이상의 발전기금 또는 기자재를 유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직원 	공적에 따라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결정	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19

구 분	포 상 명	포 상 대 상	부 상	비고
	교수업적평가상	・ 당해연도 교수업적평가 결과 최우수자(1명)		
		・ 당해연도 교수업적평가 결과 우수자(2명)		
상장	직원근무평정상		해당시결정	
	강의우수교수상	 가군 (전임교원) 전임교원로써 매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임교원 5명 나군 (겸임교원 및 외래교수) 겸임 및 외래교수로써 매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겸임교원 및 외래교수 5명 	-110 160	
	창안상	·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 대학 발전에 끼친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		
감사패	감사패	 대외 인사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, - 500만원 상당 이상의 교육기자재를 기탁한 개인이나 단체 - 5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이나 대학발전 기금을 기탁한 개인이나 단체 - 산학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월등한 기업체(1년에 3명 이상 또는 3년간 6명 이상취업, 1년에 10명 이상 현장실습) - 고교생 경진대회에 많은 학생을 참여시켜 대회를 빛낸 고등학교나 연계교육, 협약학과 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		
감사장	감사장	 산학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 (1년에 2명 이상 또는 3년간 4명 이상 취업, 1년에 5명 이상 현장실습) 100만원(현물 및 부동산)이상 대학발전 기금을 기탁한 개인 및 단체) 		
상장 / 표창장	상장 / 표창장	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초·중·고교생의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(대상, 금상, 동상, 장려상 등) 기타 본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 입상자 	대회 개최시 결정	
	상장 / 표창장 상장 / 표창장	・ 본교와 연계 및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의 학생 중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 학생・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해당시 결정	
	ㅇㅇ / ফ.ૣૣૢૢ	/1의 ㅇㅎㅋ ㄹㅛ의되쓰 건경약된 경투	에 6 시 包含	1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19

[별표 2]

제20**-**호

記念牌

釜山經商大學校 教授 000

貴下州서는 釜山經商大學校 教授로 在任 (19**、3~20**、2)하시는 동안 圓滿한 人品과 調和로운 學德 및 誠實한 使命感으로 大學의 發展과 人材의 養成에 크게 獻身하였으므로 停年退任에 즈음하여 이 牌를 드립니다.

20**年 *月 **4日

學校法人和信學園 理事長 韓 百 龍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19

[별표 3] <개정 2019.12.10.>

<10(20,30)년 근속표창패>

제 20**- 호

공 로 패

직 급 : 성 명 :

귀하께서는 본 대학에 **년간 근무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공로패를 드립니다.

20**년 10월 20일

부산경상대학교 OO박사 총장 000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9/19

[별표 4]

<대학발전기여상/공적상>

제20**-**호

표 창 장

소속: 직위:

성 명 :

(공 적 문)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0/19

[별표 5]

제20**-**호

상 장

교수업적평가 최우수(우수)상

> 소 속: 직 위:

성 명 :

위의 사람은 본 대학 '00학년도 교수업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 에 본 상장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1/19

[별표 6]

제20**-**호

상 장

직원근무평가 최우수상

> 소속: 직위: 성명:

위의 사람은 본 대학 '00년도 행정직원근무평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본 상장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2/19

[별표 7] 겸임 및 외래교수용

제 20**-** 호

상 장

성 명: 0 0

생년월일: 19**.**.**

귀하는 20**학년도 제*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수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.

20**년 **월 **일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이 이 이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3/19

[별표 8] 전임교원용

제 20**-** 호

상 장

귀하는 20**학년도 제*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수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.

20**년 **월 **일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아이 이 이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4/19

[별표 9]

제20**-**호

상 장

창 안 상

소속: 직위: 성명:

(창 안 문)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5/19

[별표10]

제20**-**호

감 사 패(장)

기관(단체)명 : 직 위 : 성 명 :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6/19

[별표 11]

<본 대학 주최 각종대회 및 기타 기관>

제20**-**호

상 패(장)

기관(단체)명:

직 위:

성 명:

(상 문)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7/19

[별표 12]

<본 대학 주최 각종대회 및 기타 개인>

제20**-**호

상 패(장)

학 교 명 :

학 년:

성 명:

(상 문)

년 월 일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8/19

[별지 1]

	공 적	조 서				
소 속		주 소				
직 위		주민등록번호				
성 명		수공기간				
추천포상 종류・등급		사정포상 종류・등급				
	주 요	경 력				
연 월 일	내 용	연 월 일	내 용			
	과거 포상경력(훈	장, 포상, 표창	등)			
연 월 일	내 용	시 행 청				
	공 적 사 항(육히	원칙에 의거 작	성)			
위 사람의 공적사항이 확실함을 확인하고 본 대학 포상규정에 의거 00년도 00상 포상 후 보자로 추천합니다.						
	년	월 일				
	추천자 소속 :					
	직 위 :	성 명 :	인			



문서번호	BSKS-3-1-43
제정일자	2005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9/19

[별지 2]

포 상 대 장

ㅎ스	여원이	포상종류	포상기관	포 상 자			포상공적 투	부 상
エナ	1 년 년	工。0月	工资门ゼ	소 속	직 위	성 명	工00円	Tő